

부동산 분양계약 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전 타입 : 15만원)를 납부하신 후 정부수입인지 아파트 계약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(관련법령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)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일	분양대금 (총 공급금액)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 (분양대금+프리미엄)	

- 공급계약 체결 시 '종이문서용 정부수입인지'를 구매하여 첨부
-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임
- 전자수입인지에는 구매자의 이름/생년월일이 표기됨[대리구매 가능하며 제출한 신분증의 이름/생년월일이 기재됨]

□ 세액

기재 금액	세 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
10억원 초과	350,000원

□ 구입처 및 구입방법

구 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 입 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	우체국, 은행(방문 전 해당 구입처 확인 요망)
구입방법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② 종이문서용 "전자수입인지"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등 소유권 이전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⑤ 결제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⑥ 출력 ⑦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 : 인지세납부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③ 결제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유의사항	전자수입인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불가)	

□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부과 (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)

기 간	납부기한이 지난 후 ~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